C - 95 - 2014

# 흙막이공사(띠장 긴장 공법, Prestressed Wale Method) 안전보건 작업지침

# 1.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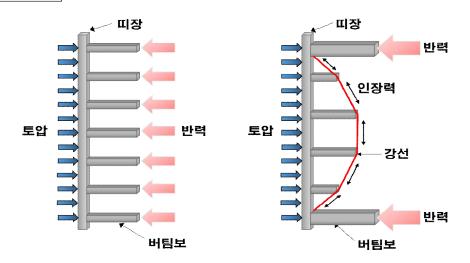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 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, 띠장 긴장 공법 (Prestressed Wale Method) 흙막이공사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현장 긴장방식의 띠장 긴장 공법(Prestressed Wale Method)으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띠장 긴장 공법(Prestressed Wale Method)"이란 띠장에 PS 강선, 짧은 받침 대 등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트를 도입, 기존의 버팀보들을 대체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의미하며, 현장 긴장방식과, 공장 긴장방식으로 구분된다. 현장 긴장방식의 띠장 긴장 공법 개념도는 <그림 1>의 (b)와 같으며 프리스트레스 적용방법에 따라 반력으로 작용시키는 방법과 모멘트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띠장 긴장 공법은 작업공간의 확보를 통해 건설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PS 강선의 손상이나 긴장력 손실 시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어 긴장작업 및 긴장 후 계측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.



(a) 버팀보 공법 (b) 현장 긴장방식의 띠장 긴장공법 <그림 1> 버팀보 공법과 현장 긴장방식의 띠장 긴장공법의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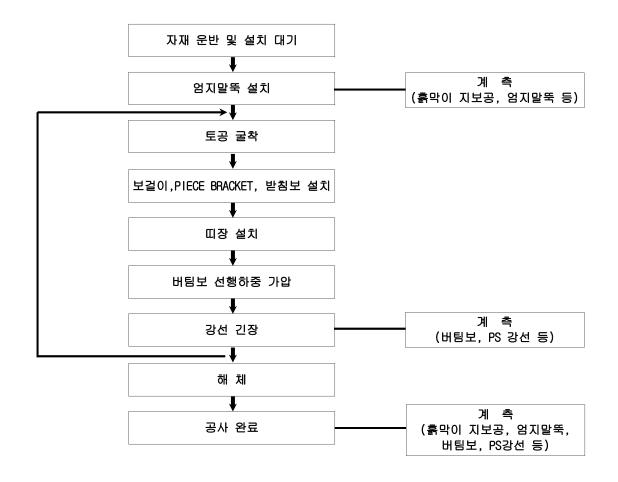
- (나) "PS 강선 (Prestressed wire)"이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고강도 강선을 말한다.
- (다) "엄지말뚝"이란 작용토압에 저항하는 흙막이벽체의 주부재로서 벽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.
- (라) "버팀보(Strut)"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띠장 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수평버팀부재를 말한다.
- (마) "띠장(Wale)"이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로써 흙막이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 등에 전달하기 위하여 흙막이벽에 접하여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바) "긴장(Stressing)"이란 띠장에 설치된 PS 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앵커부"란 띠장에 적용된 PS 강선의 인장력을 지지하여 구속해주는 부분을 말한다.
- (아) "선행가압(Prejacking)"이란 흙막이벽에 버팀보를 설치하고 흙막이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버팀보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.

KOSHA GUIDE C - 95 - 2014

- (자) "사업주"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(차) "과굴착"이란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굴착 깊이보다 과하게 지 반을 파내는 것을 말한다.
- (카) "홈메우기"란 흙막이 가설구조물의 시공 시 발생하는 틈이나 홈, 구멍 따 위를 메우는 작업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 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띠장 긴장 공법의 시공흐름도

띠장 긴장 공법의 시공흐름도는 <그림 2>와 같다.



<그림 2> 띠장 긴장 공법의 시공순서

## 5. 띠장 긴장 공법의 일반 안전조치 사항

- (1)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에 관련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띠장의 설치 위치, 시공순서 등에 대한 띠장 긴장 공법의 제반사항
- (나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,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, 양중기 사용작업 등
- (다)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지반의 굴착작업
- (라) 중량물의 취급작업
- (마) PS 강선의 계측, 유지관리 및 철거에 대한 제반사항
- (2)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· 관리·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고려하여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시공계획서 및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떨어짐, 맞음, 끼임, 넘어짐 등의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, 낙하물방지망,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자의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소에 작업발판,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의 착용상태 감시, 악천후 시에는 작업의 중지,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, 무너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.
- (6) 띠장 긴장 공법의 적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제반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 및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7)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시 PS 강선 설치 및 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(가) 긴장 작업 전 긴장장치 후방에는 인장력의 최대반력에 견딜 수 있는 방 호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긴장 작업 전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띠장의 갑작스런 한쪽으로 치우 침, 비틀림, 넘어짐 등에 대하여 누름 브라켓(Bracket)의 적용, 홈메우기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다) 긴장 작업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(라) 긴장 작업 중에는 긴장장치 배면에서의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8) 띠장 긴장 공법의 흙막이 공사 시 줄파기 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, 기록, 표시하여야 하며,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, 주지시켜야 한다.
- (나) 흙막이 시공 위치에 상하수도관, 통신케이블, 가스관, 고압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에서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하매설물 탐사장비(GPR, 탄성파 등)를 이용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. 또한 줄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 야하며, 필요 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9)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시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각종 장비의 뒤집힘, 깔림, 끼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 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양질의 토사치환 및 철판 깔기나 콘크리트 등을 포설한다.
- (나) 크레인, 굴착장비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 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, 작업 시작

C - 95 - 2014

전에 ① 권과방지장치,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, ②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(다)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재를 실을 때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 는 안 되며, 무게중심을 확보하여 깔림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라) 장비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평탄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양 장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지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지 반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 는 등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장비를 반출하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(마) 현장 내 장비의 이동경로 또는 인근에 고압전선로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10)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시 시공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 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흙막이 설계 및 공사 시에 보일링(Boiling) 및 파이핑(Piping)과 히빙 (Heaving)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흙막이 변형, 무너짐, 주변 지반 함몰 등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 및 차수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토압의 변화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(11) 띠장 긴장 공법의 주요 부재가 되는 H-형강, 철판, PC 강선 및 정착부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변형,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K.S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규격 제품이어야 한다. 또한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응력을 감소시켜 적용한다.
- (12) 공사의 안전성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측계획이 사전에 수립 되어야 하고 인접 주요구조물 등의 중점 검토해야 하는 장소에 계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주요구조물 및 건물과 인접한 구조물에 띠장 긴장 공법을

C - 95 - 2014

적용할 경우 실시간 자동화 계측을 기본으로 한다.

(13) PS 강선의 긴장력 손실, 편심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에 대비하여 비상시 연락체계, 피난계획, 응급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.

# 6. 띠장 긴장 공법의 각 공정별 안전조치 사항

#### 6.1 줄파기 작업

- (1) 줄파기 작업 전 지하매설물의 유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매설 위치확인 및 노출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하매설물 표식과 보호조 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줄파기 작업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, 기계·기구,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.
- (3)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천공 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4) 지하매설관의 절곡부, 분기부, 단관부,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,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5)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,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 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, 지하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,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필요 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 포장하여야 한다.

C - 95 - 2014

(7) 시험천공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 하여야 하며,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 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

#### 6.2 엄지말뚝 시공

- (1) 엄지말뚝의 운반·인양은 비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항타기 작업범위까지 운반하여야 한다.
- (2) 엄지말뚝 인양용 와이어 로프, 샤클 등 보조기구는 작업 전에 체결상태를 확인하여 불시에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3) 엄지말뚝의 인양 중 떨어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접합부분은 결속하고, 인양용 고리부분은 자중을 고려하여 용접 등의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.
- (4) 엄지말뚝의 인양 시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에 의한 부딪힘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(5) 천공에 의한 엄지말뚝의 삽입은 천공된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변 지반보강 이후에 하여야 한다.
- (6) 흙막이 벽체와 관련된 엄지말뚝은 연직도 및 직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, C.I.P 및 S.C.W의 경우 공극이 없고 구근강도 등의 품질이 시방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7) 케이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인발은 인발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여 파일 강재의 뒤틀림 등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8) 인발한 케이싱에 의한 깔림 방지를 위해 하단에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이동 후 적재하여야 한다.

#### 6.3 굴착 작업

(1) 지반의 무너짐, 매설물의 손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질,

C - 95 - 2014

매설물, 지하수위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굴착시기, 작업순서, 작업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- (2)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지상에서 굴착저면까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설계단 형식의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가설계단 끝에는 안전난간, 가설계단 하부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및 맞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저면과 지상에 장비 및 덤프트럭의 작업구간과 분리하여 근로자의 안 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4) 흙막이 벽에서 토사와 함께 물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유도배수 또는 별도의 차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5) 우수 등 지표수 유입에 의한 이상 수압 등으로 흙막이 무너짐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콘크리트 타설, 비닐 등의 설치와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6) 굴착토사 및 버력은 버킷(Bucket)의 높이 이하로 담아서 양중·운반하고 버팀보와 띠장 위에 있는 버력과 작업부산물 등은 수시로 제거하는 등 떨 어짐 및 맞음 재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굴착토사·버력의 반출과 재료의 반입·반출시 굴착저면과 지상에 각각의 신호수를 배치하고 양중, 상차, 하차 등의 작업이 신호수의 신호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하는 등 부딪힘, 끼임, 떨어짐 등의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8) 특히, 띠장 설치 및 PS 긴장 후 다음 단계 굴착 작업 중 굴착토사·버력을 반출할 때에 버킷, 굴삭기 장비 등과 PS 강선과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선보호장치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장비가 강선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- (9) 띠장 긴장 공법은 과굴착, 편굴착 등에 의한 과다토압 또는 편토압 작용으로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.

## 6.4 띠장 및 버팀보 설치







<그림 3> 띠장 및 중앙· 코너부 버팀보 설치

- (1) 띠장 및 버팀보는 설계도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, 하부 굴착은 버팀보 가압 및 PS 강선 긴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(2) 띠장 및 버팀보는 시공에 앞서 재질, 단면손상 여부, 재료의 구부러짐, 단면 치수 등을 점검하여 시공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하중에 의하여 좌 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,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.
- (3) 띠장은 지층경계면, 이질층을 횡단하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집중계측을 실시하여 띠장 변형 등을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띠장, 버팀보 등의 설치를 위한 자재 양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

C - 95 - 2014

하여야 하며 자재가 이동하는 경로 및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.

- (5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흙막이 지보공과 측면에 밀착되는 띠장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및 관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계도서 이상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.
- (7) 띠장의 하단에 보걸이 또는 띠장 받침대를 선 시공하고, 띠장을 거치후 볼 트를 체결한다.
- (8) 띠장 받침대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직 수평 모두 직선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하며, 받침대의 지지력은 띠장의 자중과 상재하중 내하력을 견디도록 견고 히 시공해야 한다.



<그림 4> 띠장 홈메우기

- (9) 다음단계의 PS 강선 긴장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띠장의 편심,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띠장 배면에 강재, 시멘트 그라우팅 등을 이용한 홈메우기 등을 사전에 시공하여야 한다. 강재, 시멘트 그라우팅 등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이상을 확보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.
- (10) 또한 PS 강선 긴장작업 중 띠장의 뒤틀림,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름 브라켓(Braket)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C - 95 - 2014

- (11) 띠장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처짐발생 우려시 Wire 등을 이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.
- (12) 띠장의 거치 및 연결 시에 흙막이 구조의 변형 등을 상시 육안으로 확인 하고 띠장의 떨어짐 등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양장비에 걸어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.
- (13) 버팀보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지장물의 유·무, 구조물 타설계획,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14) 버팀보는 중간파일 및 띠장과 적절한 연결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프레임 구조를 이루도록 하며, 띠장 전장에 작용하는 토압으로 인한 좌굴파괴에 저 항하여야 한다.
- (15) 버팀보 위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(16) 버팀보 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자가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성 검토 후 버팀보 위에 작업발판과 수평구명줄을 설치하고 수평구명줄에 안전대 고리를 연결한 후 통행한다.

## 6.5 버팀보 가압 및 PS 강선 긴장작업

- (1) 버팀보 가압 및 PS 강선 긴장작업은 사전에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 계획서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가압 및 긴장작업은 책임기술자와 관리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사전에 띠장 긴장 공법에 대한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긴장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에 필요한 PS 강선, 유압잭 등의 자재들은 작업 장소 인근에 작업 순 서별로 정리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적재하여야한다.

C - 95 - 2014

- (4)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수행됨에 따라 떨어짐, 끼임, 부딪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구획을 설정하고 관리감 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버팀보 가압 및 PS 강선 긴장작업 시 심각한 구조변형 등의 이상현상 및 위험한 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,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6) PS 강선 배치 완료 후 다음의 순서로 버팀보 가압 및 PS 강선 긴장을 실시한다.
- (가) 가시설 설치 상태 및 볼트 체결 상태, 홈메우기·보걸이 상태 확인
- (나) 중앙버팀보 가압 (중앙버팀보가 있는 현장)
- (다) 코너버팀보 정착연결보 가압
- (라) PS 강선 긴장



<그림 5> 버팀보 가압





C - 95 - 2014

<그림 6> 버팀보(지지점)위치의 띠장 PS 강선 긴장

- (7) 버팀보 가압은 설계도서 (도면 또는 구조계산서)상 명시된 가압력을 가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8) 잭(Jack)을 사용하여 버팀보에 선행하중을 재하 시 잭의 좌굴 및 휨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트로크 한계의 70%이상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.
- (9) 잭(Jack)을 사용하여 버팀보에 선행하중을 재하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.
- (가)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.
- (나)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, 가압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중앙 및 코너버팀보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(10) PS 강선은 좌우대칭으로 배치하고 긴장은 양쪽에 각각 긴장한다. 긴장작업 순서는 가능한 구조물에 대칭이 되도록 실시하여 구조물에 편심에 의한 프리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11) PS 강선 긴장 시, 앵커정착 헤드면과 PS 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12) PS 강선 긴장 시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설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(가) PS 강선의 긴장 순서
- (나) 긴장력
- (다)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
- (13) PS 강선을 긴장할 경우에는 강선의 신장량, 긴장력, 강선긴장기의 사양, 특기사항 등이 기록, 보관되어야 한다.

- (14) 가압 및 긴장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적 작업은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(15) 긴장작업시 PS 강선의 파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인장잭 배면에 보호강판을 설치하고 정착부 뒤편에는 관계자외의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16) 현장 여건상 부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긴장부와 정착부에 대하여 홈메우기 용접, 연결부 볼트조립 등을 확인 후 시행한다.
- (17) 돌출된 PS 강선 단부에는 근로자들이 찔리지 않도록 캡 등을 씌워야 한다.



<그림 7> 띠장의 PS 강선 긴장작업 완료

(18) 버팀보 선행가압 및 PS 강선 긴장 후 다음 단계 굴착시 과굴착에 의한 흙 막이 지보공의 무너짐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조 안전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작업시 책임기술자 및 관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6.6 PS 강선 계측 및 관리

- (1) 계측장소는 설계도면 또는 시공계획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다.
- (2) 계측빈도는 굴착중 주 2회 이상, 굴착완료 후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

C - 95 - 2014

계측의 중요성, 목적, 공사의 진척정도, 계측 방법 여부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. 또한 이상토압의 발견 또는 불안전한 변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고 위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(3) 계측항목별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수위별 대처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.
- (4) 띠장 긴장 공법에서의 계측은 원칙적으로 PS 강선의 변위 계측과 기존 계측 시스템을 병용하여 띠장의 휨 거동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(5) 버팀보 설치 직후, 띠장 설치 직후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초기치를 설정하며 설치 후 선행가압 및 PS 강선 긴장 완료시, 굴착시 등 단계별로 계측치의 변화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6) 매회의 계측시마다 전회의 데이터를 지참하여 이상치가 아닌가를 현장에서 파악한다.
- (7) 측정이 종료되면 계측 데이터를 정리하여 측정치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상 이 있으면 재측정을 실시한다.



<그림 8> 띠장의 지반변형에 의한 휨변위 측정

- (8) 데이터의 정리는 굴착상태 및 지보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(9) 각종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를 이용하여 장래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.

C - 95 - 2014

- (10) 계측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저히 큰 변위 및 응력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11) 계측결과 분석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되어야 한다.
- (12) 띠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, 띠장의 직선성 관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. 단, 띠장이 굴착측 또는 배면측으로 단일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이나, 적절한 허용한계 (띠장 길이(L)×0.25%)를 넘어서는 안된다.
- (13) 띠장의 과다변위, 허용긴장력 초과로 인한 띠장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띠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응급되메우기, 추가 띠장 및 버팀보설치 등의 대책수립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(14) 띠장의 길이와 변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긴장력을 결정한 후 추가 긴장을 하여야 하며, 추가 긴장력을 포함한 총 긴장력은 설계 긴장력의 1.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.
- (15) 띠장이 단일곡선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정착장치에 추가 긴장력을 도입하고, S곡선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편심보의 유압잭을 조정하여 띠장의 직선성을 유지 시킨다. 띠장이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뒤, 강선의 긴장 여부를 결정한다.

#### 6.7 해체 및 공사완료

- (1)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 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,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,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, 방법, 사용기계, 공정 등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와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3) 띠장의 해체 및 철거는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, 구조물공 또는

C - 95 - 2014

되메우기공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한다. 해체는 구조물 벽체 슬래브가 충분히 양생한 이후로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와 버팀목 등에 의하여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 시행한다.

- (4) 띠장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, 강선의 긴장력 제거는 반드시 책임 기술자의 지휘 아래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
- (5)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<그림 9> 띠장 긴장 공법 흙막이 공사 전경

# 7. 기타 안전조치 사항

기타 흙막이 공사에 관한 안전작업은 KOSHA GUIDE C-39-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KOSHA GUIDE C-4-2012 흙막이 공사(엄지말뚝) 및 C-63-2012 흙막이 공사(C.I.P 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.